

협 조 전

안전보건팀 / 담당자 : 유장열 이사
TEL 031- 645-2251 / FAX (031) 758-0537

문서번호 : 안전보건팀 22 - 21호
시행일자 : 2022. 11. 03
수 신 : 현장소장
참 조 : 안전관리자 /관리감독자
제 목 : 위험물 보관 및 관리 철저

1.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, 제17조, 제225조 규정에 의거 규정된 위험 물질은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현실은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위험 물질을 사용 후 남은 잔량을 그냥 방치 보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

3. 이로 인해 위험 물질이 발화를 일으켜 폭발사고 위험원인 및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등 대, 외 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현장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,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저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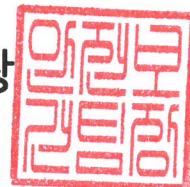
- 아 래 -

□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

- 1) 철회로 제작된 별도 저장소 지정 운영
- 2) 관리 책임자 정/부 지정 표기
- 3) 안전 표지판 및 MSDS 물질 표지판 부착
- 4) 출입문 시건장치 설치
- 5) 통풍이 잘 되는 곳 위치 지정
- 6) 위험물 저장소 주변 소화기 비치
- 7) 고압용기와 유류 혼재 보관 금지

붙 임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] . 끝.

안 전 보 건 팀 장



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19. 12. 26.>

위험물질의 종류(제16조·제17조 및 제225조 관련)

1.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

- 가. 질산에스테르류
- 나. 니트로화합물
- 다. 니트로소화합물
- 라. 아조화합물
- 마. 디아조화합물
- 바. 하이드라진 유도체
- 사. 유기과산화물
- 아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
- 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

2.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

- 가. 리튬
- 나. 칼륨·나트륨
- 다. 황
- 라. 황린
- 마. 황화인·적린
- 바. 셀룰로이드류
- 사. 알킬알루미늄·알킬리튬
- 아. 마그네슘 분말
- 자. 금속 분말(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)
- 차. 알칼리금속(리튬·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)
- 카. 유기 금속화합물(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)
- 타. 금속의 수소화물
- 파. 금속의 인화물
- 하. 칼슘 탄화물, 알루미늄 탄화물
- 거.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
- 너.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

3.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

- 가.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
- 나. 아염소산 및 그 염류

- 다. 염소산 및 그 염류
- 라. 과염소산 및 그 염류
- 마. 브롬산 및 그 염류
- 바. 요오드산 및 그 염류
- 사.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
- 아. 질산 및 그 염류
- 자. 과망간산 및 그 염류
- 차. 중크롬산 및 그 염류
- 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
- 타.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

4. 인화성 액체

- 가. 에틸에테르, 가솔린, 아세트알데히드, 산화프로필렌,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
- 나. 노르말헥산, 아세톤, 메틸에틸케톤, 메틸알코올, 에틸알코올, 이황화탄소,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
- 다. 크실렌, 아세트산아밀, 등유, 경유, 테레핀유, 이소아밀알코올, 아세트산, 하이드라진,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

5. 인화성 가스

- 가. 수소
- 나. 아세틸렌
- 다. 에틸렌
- 라. 메탄
- 마. 에탄
- 바. 프로판
- 사. 부탄
- 아.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

6. 부식성 물질

- 가. 부식성 산류
 - (1)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, 황산, 질산,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
 - (2)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, 아세트산, 불산,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

나. 부식성 염기류

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칼륨,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

7. 급성 독성 물질

가.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, 즉 LD50(경구, 쥐)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
나.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, 즉 LD50(경피, 토끼 또는 쥐)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
다.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, 즉 가스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, 증기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10mg/ℓ 이하인 화학물질, 분진 또는 미스트 1mg/ℓ 이하인 화학물질